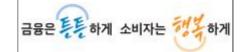


보도참고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1.7.(목)		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팀 장	이상탁	(02-3145-5190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한태진	(02-3145-5183)

[금융꿀팁] <156>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- □ **금융감독원**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**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**하고 있습니다.
 - 이번에는 **156번째로 퇴직연금 실물이전** '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**안내**해 드립니다.
 - *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,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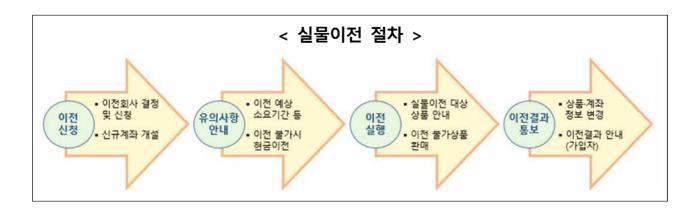
〈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〉

- ①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(수관회사)에 신청하세요
- ②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(DB↔DB, DC↔DC, IRP↔IRP)만 가능합니다
- ③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
- ④ 이 · 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하세요
- 5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
- ⑤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 실물이전 처리가 가능해요
- □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해요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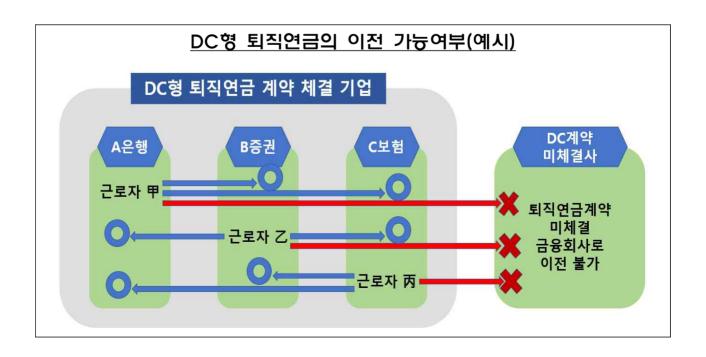
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*

- *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
-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(수관회사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존 가입회사(이관회사)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 진행
- □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(이하 '수관회사')*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
 - * 단,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,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
 - 이후,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(이하 '이관회사')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^{*}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,
 - *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(현금이전) 등
 -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,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,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
 - * 상품 편입 없이 **현금성 자산만을 보유**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**현금이전**을 **신청**해야 함에 유의



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가능

- ◆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(DB↔DB, DC↔DC, IRP↔IRP)에서 가능
- □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(DB ↔ DB, DC ↔ DC, IRP ↔ IRP)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- IRP 간 이전은 가입자(계약 주체)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,
 - **DB 간**, 또는 **DC 간 이전은 회사**(계약 주체)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**사업자 간**에만 **이전**이 가능하므로,
 -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.
- □ 또한, 퇴직연금계좌인 **개인형IRP**와 **연금저축계좌 사이**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, **현금이전만 가능**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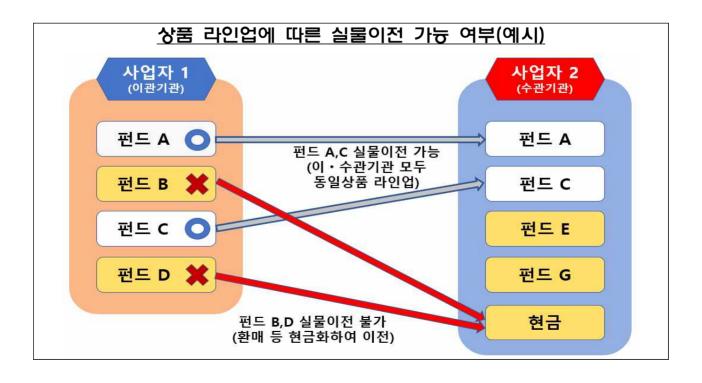
- ◈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, 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존재
- □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*,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
 - * **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은 신탁계약** 또는 **보험계약** 형태로 체결되는데, **보험계약**으로 체결되는 **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 구조**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**실물이전**이 **불가**
 - **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**를 참고하여 보유한 **상품**의 **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**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하단「실물이전 제외 대상」참고

<u>실물이전 제외 대상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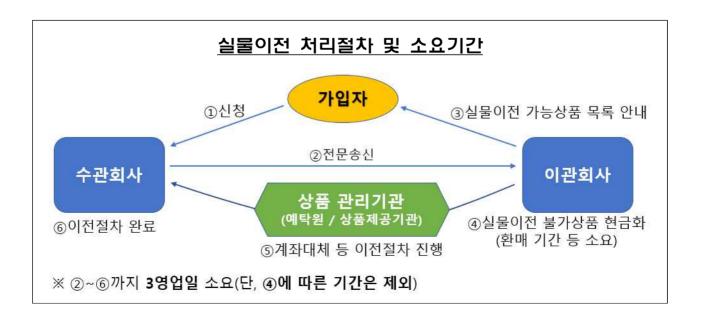
- ◆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,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* 되며,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**도 실물이전이 불가
 - * (계약 형태)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, 언번들형 계약(사용자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)
 - (상품 특성)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(디폴트옵션), 지분증권, 리츠, 사모펀드, ELF, 파생결합증권, RP, MMF, 종금사 발행어음 등
 - **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(단,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),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,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,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, 자사 원리금보장상품, 환매불가 펀드 등

이 · 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

- ◈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(라인업)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
- □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(예금, GIC, ELB·DLB 등), 공모펀드 (MMF 제외), 채무증권,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 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.
 - 다만,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
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(수관회사)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(라인업)
 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.
 - 즉,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,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*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.
 - * 실물이전이 불가한 **상장상품**이 있는 경우에는 **가입자**가 **직접** 해당 상품을 **매도**해야 하며, 일정기간 내 **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**될 수 있음
 - 이 경우, 상품 매도로 인해 **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**가 적용되는 등 **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- ◈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,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됨
- □ 가입자가 **실물이전 신청시 수관회사**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 **전문**을 **송신**(이관회사는 이를 수신)하게 되며, 이때 실물이전 **절차**가 **시작**됩니다.
 - 동 전문의 송신을 기준으로 최소 **3영업일***이 소요되며,
 - * 전문송신이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3영업일,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4영업일
 - 실물이전 과정에서 **현물이전이 불가**하여 환매 등 **현금화**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*에는 **해당 기간만큼**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가이 늘어나게 됩니다.
 - * 해외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경우 실물이전 소요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됨
 - 또한, 이전할 **상품**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
 -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
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

6 실물이전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 필요

- ◈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
- □ 실물이전 신청시 이관회사는 이전신청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,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전에 대한 최종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 - 동 이전의사 확인 절차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점 방문,
 휴대폰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,
 - 통화실패 등으로 **가입자의 이전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**에는 이전 절차가 **취소**될 수 있으므로, 이전 신청시 전화를 통한 이전 의사 확인을 선택하였다면 **연락처** 등을 **정확히 기재**해야 합니다.
 - 7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·운용 필요
 -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므로,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・운용이 중요
- □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,
 -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**수수료 수준**, **상품 라인업** 등을 **비교**해 봐야하며,
 - **실물이전 이후**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**가입자 스스로** 적립금 운용에 대한 **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**합니다.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